

FTA 협상에서의 농산물 민감품목 선정방안 RCEP 협상에서의 식량작물, 축산물, 낙농품을 중심으로*

정대희** 송주호***

Keywords

보호지수(tariff protection index),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농산물(agricultural products),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bstract

The selection of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is a necessary and important part of Free Trade Agreement(FTA) negotiations due to its consequential impacts on agricultural markets of the country. However, there is no standard method to select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because the agricultural sectors of FTA partner countries are different. Therefore, selecting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is difficult and has to consider various economic factors including potential ripple effects in the previous FTAs, which are already signed and implemented. This study presented a method for selecting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in RCEP negotiations using 20 items of food crops, livestock products, and dairy products. This study selected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based on three factors: 1) the export potential in consideration of the competitiveness (RCA, MCA) of the partner country of negotiations; 2) the tariff protection index of previous FTAs and the import dependence rate of the FTA partner country; and 3) the amount of domestic produ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rice, barley, sweet potato, mung bean, red bean, beef, and honey are expected to be major sensitive products, while potato, corn, and pork are expected to be less sensitive in RCEP negotiations. These results are interesting because barley, sweet potato, mung bean, red bean, honey should be less sensitive products than pork and duck based on

* 본 연구는 201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C2013-13)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신저자. e-mail: jhsong@krei.re.kr

the amount of domestic production. However, the former items should be more sensitive products in RCEP negotiations than the items with a high amount of domestic production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partner country's competitiveness and potential ripple effects associated with the previous FTAs.

차례

- | | |
|--------------------|--------------|
| 1. 서론 | 4. 민감품목 선정방안 |
| 2. 선행연구 | 5. 요약 및 결론 |
| 3. FTA 농산물 양허내역 비교 | |

1. 서론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칠레와 FTA 협상을 개시한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2014년 6월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와 FTA 협정이 타결되어 발효 중에 있다. 콜롬비아, 호주 그리고 캐나다와는 FTA가 타결이 되었지만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한·중·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등과도 FTA 협상 중에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에는 가입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FTA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WTO/DDA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도 2000년대 이후 FTA가 확산되고 있다. 2014년 6월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¹은 모두 585개이고 이 중 발효가 된 것은 379개이다.² 이런 상황 속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1 자유무역협정(FTA)은 그동안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 협정(RTA)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지식경제용어사전).

2 WTO에서는 상품, 서비스, 추가협상 등을 각각으로 구분하여 RTA를 합산하였다. 예를 들어 한-ASEAN FTA의 경우, 2007년에는 상품무역협정이 발효가 되었으며 투자협정은 2009년에 발효가 되었는데 이를 각각의 협정으로 구분하여 합산하였다(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한편, 일반 산업분야 비하여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분야는 FTA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 EU, ASEAN, 칠레와 같이 농업 강국들과 FTA를 체결해왔고 이들 국가의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좋아서 국내산 농산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업분야에서는 FTA 협상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민감품목 선정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향후 새롭게 추진할 FTA에서 이미 체결한 FTA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별로 주요 생산 품목과 수출 품목이 다르고, 우리나라가 기체결 FTA별, 품목별로 양허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민감품목 선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이미 체결된 FTA의 양허내역을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FTA를 맺기 시작한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FTA 체결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신규 FTA 협상에서는 기체결된 FTA를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가령 쇠고기를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이다. 이들 국가 중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쇠고기는 전체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을 이미 했고 또한 쇠고기에 대한 개방 수준이 높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체결해야 할 캐나다, 멕시코 등의 FTA에서 쇠고기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쇠고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지, 아니면 이미 주요 수입국에 개방이 된 쇠고기를 협상의 지렛대(leverage)로 활용을 하고 다른 품목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에 따른다면 전자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으나, 실익을 생각한다면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민감품목 선정 지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기체결된 FTA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FTA 협상에서 농산물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RCEP을 예로 들어 분석을 하려고 한다. RCEP은 현재 우리나라가 협상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작물, 축산물, 낙농품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고추, 마늘, 양파 등이 포함된 채소류는 기체결 FTA에서 양허수준이 매우 낮고, 또한 중국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여 기체결 FTA를 고려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농산물 민감품목 선정에 대한 연구는 WTO 협상과 FTA 협상 영향분석을 위한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WTO/DDA 협상의 농업분야 모델리티 4차 수정안(2008년 12월)에 의하면 민감품목, 그리고 개도국의 경우에는 특별품목을 선정할 수 있고, FTA 협상에서는 양허수준에 대한 협상을 거쳐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우선 WTO 협상에서의 민감품목 선정에 관한 연구는 임송수 외(2003), 이재옥 외(2005), 서진교 외(2005), 송주호 외(2009)의 연구가 있다. WTO 협상은 모든 WTO회원국(2014년 6월 현재 현재 159개국)에게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농업협상에서는 민감품목은 특별한 선정 원칙은 없고 각국이 일정 한도(선진국은 전체 세번의 4%, 개도국은 5.3%) 내에서 스스로 선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개도국에게만 허용되는 특별품목의 경우에는 전체 세번의 12%까지 스스로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식량안보, 생계보장, 농촌개발이라는 3가지 분류별로 제시된 지표들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DDA 협상에 의한 농산물 민감품목 선정에 관한 연구들은 WTO의 기준과 더불어 국내 농업 생산의 산업적·지역적 특징을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임송수 외(2003)는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 방향”에서 민감품목 선정에 있어 농가 생계대책과 이에 대한 정부 보상 및 예산제약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발생하는 농가소득 피해를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내외 가격차, 품목별 요소집약도 등을 고려한 국제경쟁력, 양허관세수준, 생산의 지역집중도 등을 민감품목 선정에 고려할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재옥 외(2005)는 “개도국 특별품목 및 특별수입구제조치 관련 협상 대책 연구”에서 특별품목은 식량안보(옥수수, 콩, 돼지고기, 우유, 닭고기, 계란), 생계보전(쌀, 고추), 농촌개발(돼지고기, 쇠고기, 고추, 콩, 보리) 등의 요인으로 품목을 선별하였으며, 지역 특성 측면에서는 감귤을 포함하였다.

서진교 외(2005)는 “DDA 농업협상 대응전략”에서 민감품목 선정의 기준으로 농가 피해, 자원의 유희화, 농업고용,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식량안보, 해당 품목의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민감품목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민감품목의 숫자보다는 민감품목의 대우에 중점을 두어 적정 민감품목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주호 외(2009)는 “DDA 농업협상 시나리오별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 방향 연구”에서 DDA 타결에 따른 품목별 생산 감소액, 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성장/사

양산업 여부, 산업의 현재 보호 정도, 한·미, 한·EU FTA 체결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종전 연구와는 달리 FTA 체결의 영향을 고려하였지만, FTA에서의 양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미국과 EU의 수입비중만을 고려한 한계점이 있다.

농업부문 FTA 협상에서 민감품목 선정을 위한 연구는 최세균 외(2006, 2009, 2010), 문한필 외(2011)가 있다. 이들 연구는 FTA는 양자 간 협상이기 때문에 WTO 연구와는 달리 협상 상대국의 농업 생산현황과 우리나라와의 교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있다.

최세균 외(2006)는 “농업부문 FTA 추진전략 연구 및 DB 구축”연구에서 부가가치 비중, 예상 피해액(관세철폐로 인한 생산자 잉여 감소), 교역가능성(국제교역 거래비용에 따른 교역 가능성), 관세율 및 가격경쟁력, 지역집중도, 구조조정 방향 등을 민감품목 선정 주요 지표로 선정하였다. 또한 최세균 외(2009)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FTA 협상 대상국을 대상으로 FTA 대상국의 생산, 수출입,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국별 민감품목을 선출하였다. 최세균 외(2010)는 “한·베트남 FTA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 최세균 외(2009)의 연구와 유사하게 베트남의 생산, 수출입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교역 등을 분석하여 1차적으로 민감예상 품목을 선정한 다음, 해당 베트남산 농산물의 수출물량과 수출단가를 전세계 주요 수출국과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국의 상품과 비교를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시장비교우위지수(Marke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MCA)를 연도별로 분석하여 관세하락 시 베트남산 농산물의 수입증가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문한필 외(2011)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대국 농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비농업분야에서 민감품목을 선정한 연구로는 강원문(2002), 김박수 외(2005), 박문환 외(2012) 등이 있다. 비농업분야의 연구들은 주로 무역지수를 활용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강원문(2002)은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와 국내 관세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경쟁력이 낮고(RCA 지수가 1보다 작고) 관세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해당 산업의 이익집단의 FTA 반대 정도가 다른 산업보다 높아 FTA 협상에서 민감품목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의 경우 FTA로 인해 그 산업이 위축이 되기 시작하면 산업의 쇠퇴에 따라 해당 산업의 기술도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박수 외(2005)는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한·중, 한·일 경쟁력뿐만 아니라 세계 경쟁력을 같이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경쟁력 분석을 위하여 대세계 및 대중, 대일 무역특화지

수(Trade Specification Index: TSI), 수출증가율, RCA 지수 등을 사용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이후 중요 성장동력산업이나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산업은 조정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박윤환 외(2012)가 “한·중 FTA 협상에 따른 공산품의 민감품목과 관심품목 추정에 관한 연구”에서 수출경쟁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민감품목과 관심품목을 선정하였다. 수출경쟁력 분석에는 TSI지수, RCA지수, MCA지수 그리고 수출유사성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ESI)가 사용되었다. 또한 ‘무역상대국 시장점유별 변화지수(Trade Partner’s Market Share Changing Ratio Index: PSCRI)’를 개발하여 시장점유율과 수출유사성지수를 결합하여 양 국가 간 경합관계와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고려한 경쟁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세계시장에서보다 한국수입시장에서 점유율 증가가 높은 품목은 민감품목 후보군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한 품목들의 협상 상대국과의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였다.

해외 연구 사례는 Jean, Laborde and Martin(2005), Sharma(2006), Martin and Wang(2004), ICTSD(2007) 등의 연구가 있다.

Jean et al.(2005)에서는 정치경제학적 후생함수를 활용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무역에서 비중이 높은 품목과 현행관세가 높아 관세감축률이 높은 품목이 민감품목으로 선정되면 유리하다고 분석하였다. Sharma(2006)은 단순히 양허관세가 높은 품목이 민감하다고 분석하였고, Martin and Wang(2007)은 실행관세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ICTSD(2007)은 WTO 협상에서 특별품목 선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개도국들은 육류, 유제품, 옥수수, 쌀, 설탕, 밀, 양파, 토마토 등이 특별품목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3. FTA 농산물 양허내역 비교

3.1. 분석대상 FTA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여러 FTA 중 RCEP 협상에서의 민감품목 선정 방안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RCEP 협상 참여 국가 중 우리와 현재 FTA를 체결한 국가는 ASEAN과 인도, 그리고 호주³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는 양허내역

을 분석할 수 있지만, RCEP의 주요 국가인 중국, 뉴질랜드, 일본 등과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허내역을 분석할 수 없다. 그 외에 우리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칠레, 미국, EU의 FTA 양허내역을 분석하였다.

3.2. 관세보호지수⁴ 산정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러 FTA 협상에서 다양한 유형의 관세양허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품목별 관세보호 정도를 지수화하여 관세보호지수를 산정하였다. 관세보호지수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Estevadeordal(2000)의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restrictiveness)’가 있다. 이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정도를 서열식으로 계량화한 것이다. 이 개념을 활용하여 정혜련(2010; 2014)도 농업분야 FTA의 품목별 양허내역을 비교하기 위하여 ‘관세양허지수’를 7점 척도로 분석한 바가 있다. 그런데 관세양허지수라고 하면 숫자가 높을수록 양허를 더 많이 한 것인지 혹은 적게 한 것인지 애매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양허지수’대신 숫자가 높을수록 보호를 많이 한다는 의미에서 ‘관세보호지수’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고, 향후 FTA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1부터 10까지로 지수를 세분화하였다.

우선 각 FTA별 양허안을 관세철폐기간에 따라 1부터 6까지로 구분을 하였고, 관세가 철폐가 되지 않는 양허안들은 관세 감축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7부터 10까지로 구분하였다. 관세철폐 이외에 TRQ와 농산물세이프가드가 부가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고려해주었다. TRQ의 경우에는 상대국에게 추가적으로 TRQ 물량을 제공

3 호주의 경우에는 아직 FTA가 발효되지 않았고, 또 양허내역이 한·미 FTA와 유사하여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4 관세보호지수 산정에 있어서 현재의 관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관세를 반영하는 것은 현재의 관세 보호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의 절대관세액의 크기가 해당 상품을 보호해야 하느냐의 척도가 되기는 곤란한 부분이 동시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매니옥의 경우 MFN 관세가 887.4%로 매우 높은 품목이고, 한·미 FTA에서 5년 철폐를 하였으나 2014년 현재 FTA 특혜관세는 354.9%로 매우 높다. 한편, 양파의 MFN 관세는 135%이고, 한·미 FTA에서 15년 철폐로 양허하여 2014년 FTA 특혜관세는 108%이다. 즉, 2014년 FTA 특혜관세의 절대값은 매니옥이 더 높으나, 실제 한·미 FTA에서는 양파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 품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협상 당시의 양허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 논문에서 사용하였으나, 현재의 관세도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논문의 한계점으로 남겨두고 후속연구에서는 다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보호지수를 한 단계 하락시켰고,⁵ 농산물세이프가드의 경우에는 상대국 농산물 수출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보호지수를 한 단계 상승시켰다. 그리고 계절관세의 경우는 특정 기간에만 관세를 인하하고 그 외 기간(우리나라 농업 생산에서 중요한 시기)에는 관세를 인하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보호지수를 8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관세보호지수가 높을수록 각 FTA에서 해당품목의 보호 정도가 높고 개방수준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허내역별로 구분한 관세보호지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양허내역별 관세보호지수

관세보호지수	양허내역	관세보호지수	양허내역
1	기존 무관세	6	16~20년 철폐
2	즉시 철폐	7	1/2 감축
3	1~5년 철폐	8	1/5 감축, 계절관세
4	6~10년 철폐	9	현행유지+ TRQ, DDA 협상 이후 재협상
5	11~15년 철폐	10	현행관세 유지 및 양허제외

주: '1 기존 무관세'는 MFN 세율이 0%인 것을 의미하며, '2 즉시 철폐'는 어떤 MFN 세율이라도 발효 첫해 연도에 FTA 특혜관세가 0%가 된다는 것을 의미함. 기존 무관세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부 받지 않아도 0%의 관세가 적용이 되지만, 즉시 철폐 품목의 경우에는 상대국의 원산지가 증명되어야만 0%의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음.

WTO에서는 FTA 체결로 인한 양자간 특혜관세가 WTO 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1)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된다. 2)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에 철폐해야 한다. 3)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 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합리적 기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보통 10년 이내로 보고 있다.⁶ 따라서 관세를 10년 철폐 이상으로 양허한 품목은 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할 수

⁵ TRQ 품목의 경우 제공되는 TRQ 수준에 따라서 상품의 보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관세보호지수는 관세를 중심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현행유지 + TRQ'의 경우 관세보호지수를 9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TRQ 물량 제공 정도에 따라 실질적 관세보호지수는 9보다 낮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지수화 작업이 가지는 한계점이다. 따라서 특정 품목의 경우 TRQ 물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1단계의 정량적인 분석이 끝난 이후 2단계의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적용하여 우선 순위를 재배치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기체결 FTA를 반영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분석 범위를 1단계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⁶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trade/fta/overview/index.jsp?mofat=001&menu=m_30_90_10)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10년 이내라고 기술하고 있다.

있고 15년 철폐 이상은 고민감품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 지수 ‘5’와 ‘6’를 기준으로 향후 RCEP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추가 부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을 선별해 낼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분류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가 실제 체결한 주요 FTA별 양허내역을 지수화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양허유형별 관세보호지수

보호 지수	범례	FTA별 양허안				
		칠레	ASEAN	인도	EU	미국
1		기존 무관세				
2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3	1~5년 철폐	- 5년 철폐	- 2008년까지 철폐 - 2010년까지 철폐	- 4년 철폐	- 2년 철폐 - 3년 철폐 - 5년 철폐 - 10년 철폐+TRQ	- 2년 철폐 - 2014년까지 철폐 - 2016년까지 철폐 - 5년 철폐 - 10년철폐+TRQ
4	6~10년 철폐	- 7년 철폐 - 9년 철폐 - 10년 철폐		- 7년 철폐 - 7년(기준세율 - 1~5%)*100%	- 6년 철폐 - 7년 철폐 - 10년 철폐 - 12년 철폐+TRQ - 15년 철폐+TRQ	- 6년 철폐 - 7년 철폐 - 9년 철폐 - 10년 철폐 - 12년철폐+TRQ - 15년철폐+TRQ
5	11~15년 철폐		- 2016년까지 5%p 이하		- 10년 철폐+ASG - 12년 철폐 - 12년철폐+TRQ +ASG - 13년 철폐 - 15년 철폐 - 15년철폐+TRQ +ASG	- 7년철폐+SG - 10년철폐+SG - 12년철폐+TRQ +SG - 12년 철폐 - 15년 철폐 - 15년철폐+TRQ +SG
6	16~20년 철폐	- 16년 철폐			- 15년 철폐+ASG - 18년 철폐 - 20년 철폐	- 15년철폐+SG - 15년철폐+SG - 18년철폐+TRQ +SG
7	2016년까지 1/2 감축		- 2016년까지 1/2감축 - 2016년까지 50%p 이하	- 7년 50% 감축	- 16년 철폐+ASG - 20년 철폐+ASG - 계절관세 +TRQ	- 16년철폐+SG - 17년철폐+S - 18년철폐+SG - 계절관세+TRQ
8	계절관세, 2016년까지 1/5감축	- 계절관세	- 2016년까지 1/5감축		- 계절관세	- 현행유지+TRQ +S
9	현행유지 + TRQ	- DDA 이후	- 현행유지+TRQ		- 현행유지+TRQ	- 현행유지+TRQ
10	현행유지, 양허제외	- 현행유지 - 양허제외	- 현행유지 - 양허제외	- 현행유지 - 양허제외	- 현행유지 - 양허제외	- 현행유지 - 양허제외

주: ASG(Agricultural Safeguard)와 SG(Safeguard)는 각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하며 TRQ(Tariff Rate Quotas)는 저율할당관세, 그리고 S는 계절관세를 의미한다.

위에서 분류한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체결 FTA의 농산물 양허내역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관세보호지수의 1~6까지의 비중을 합하면 각 FTA별 이행최종연도의 관세철폐 품목의 비중과 같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타결한 한·칠레 FTA는 관세철폐율이 71.8%이며, ASEAN과는 79.5%, 미국과 EU⁷와는 각각 97.9%, 96.2%로 칠레와 ASEAN에 비하여 관세철폐율이 높다. 반면 인도와의 협정에서는 34.6%의 농산물 세번만을 관세철폐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FTA별로 각 관세보호지수별 세번 비중을 토대로 가중 관세보호지수를 구해보면, 미국과 EU는 가중 관세보호지수가 각각 3.3과 3.4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을 하였고 ASEAN과 칠레에 대해서는 각각 3.9와 4.7 수준으로 개방하였으나, 인도에 대해서는 가중 관세보호지수가 7.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따라서 같은 조건이면 미국과 EU의 상품이 다른 기체결 국가의 것에 비하여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유리하다.

표 3. FTA별·관세보호지수별 세번 비중(농산물)⁸

단위: %

보호지수	칠레	ASEAN	인도	EU	미국
1	2.1	2.8	2.1	2.8	2.1
2	14.8	34.4	5.6	39.5	35.8
3	37.1	31.9	3.1	21.1	23.4
4	17.1	0.0	23.8	3.9	25.5
5	0.0	10.5	0.0	27.5	7.2
6	0.8	0.0	0.0	1.5	3.5
(소계)	(71.8)	(79.5)	(34.6)	(96.1)	(97.5)
7	0.0	2.8	20.6	0.2	0.5
8	0.1	13.1	0.0	0.1	0.1
9	26.7	0.6	0.0	0.8	0.9
10	1.4	4.0	44.8	2.8	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중보호지수	4.7	3.9	7.1	3.4	3.3

자료: 각국의 양허안을 참조하여 비중을 계산하였음.

⁷ 단, 미국과 EU의 경우 관세가 철폐되지만, ASG로 인한 관세보호지수가 7로 상향조정된 세번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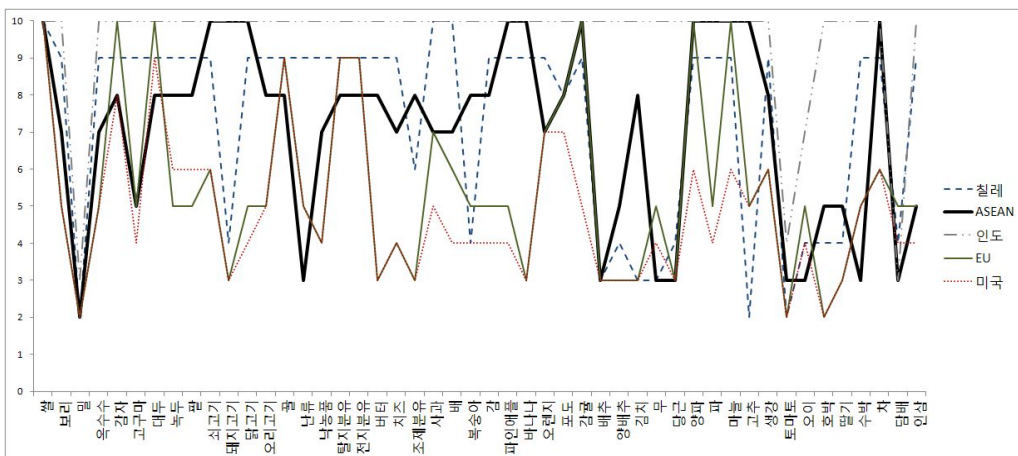
⁸ 이하의 표와 그림에서 관세보호지수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각국의 양허표를 <표 2>에서 제시된 관세보호지수를 활용한 것으로, 별도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음.

3.3. 품목별·FTA 별 관세보호지수의 비교

우리나라 농업에서 주요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FTA별 관세보호지수를 구하여 보았다. 또한 각 품목별·FTA별 관세보호지수를 7개 품목류(식량작물, 축산물, 낙농품, 과일류,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로 나누어 분석을 할 수 있으나, 현재 RCEP은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식량작물, 축산물 그리고 낙농품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채소류의 경우 RCEP(중국)의 수입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추, 마늘, 양파, 생강과 같은 품목은 기체결 FTA에서 관세양허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이들 품목의 민감성을 언급하지 않아도 RCEP 협상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질 품목군이다. 그러므로 이들 품목은 기체결 FTA에서의 양허협상 결과가 향후 협상에서 미치는 영향이 낮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FTA 협상에서 상품양허안은 각 HS 10단위 세번별로 나와 있으므로, 각 품목 내 여러 세번들 중 국내생산과 수입비중 등을 고려하여 각 품목을 대표하는 세번을 선정하여 관세보호지수를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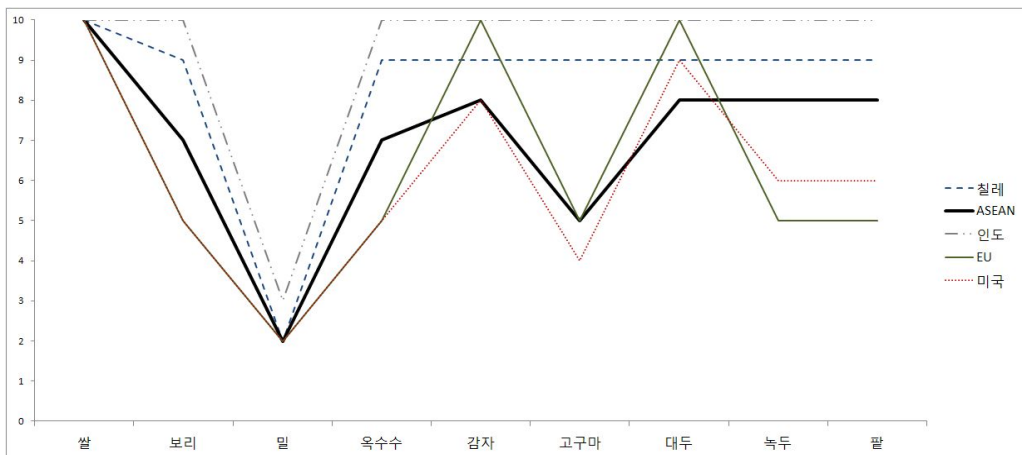
분석 결과 대체로 칠레와 인도에 대해서는 많은 품목들의 관세보호지수가 10에 가까워 많은 수의 품목들을 민감품목으로 선정하여 상당 수준으로 보호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EU와 미국에 대해서는 관세보호지수가 6 이하로 낮은 품목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품목들을 민감품목으로 선정하여 다른 FTA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양허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ASEAN의 개방 정도는 중간 정도이다. 한편 쌀은 모든 FTA에서 양허제외를 하였기 때문에 모든 FTA에서 보호지수가 10이고 밀은 이미 1980년대에 거의 자유화된 품목으로 즉시철폐 대상으로 보호지수가 2이다.

그림 1. 주요 품목의 FTA별 관세보호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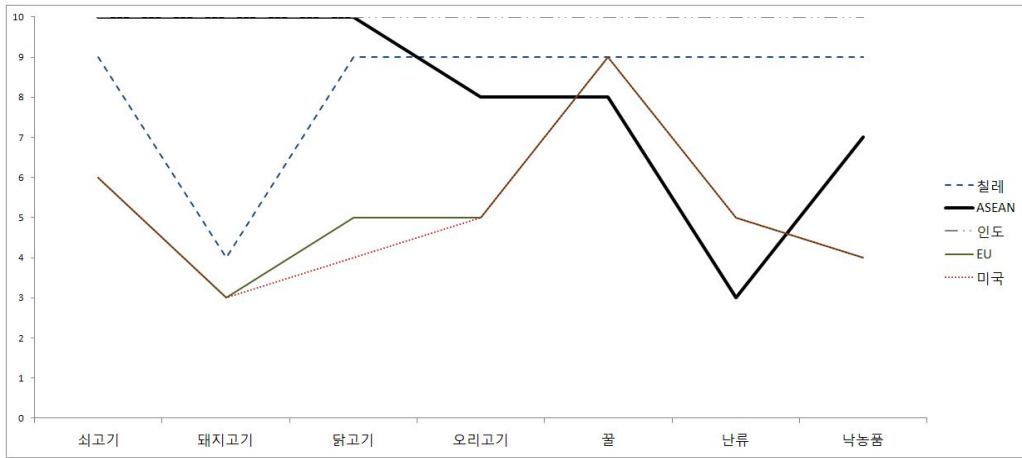
식량작물의 경우 FTA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칠레, ASEAN, 인도와의 FTA에서 곡물의 관세보호지수가 미국과 EU와의 FTA 비하여 높은 편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쌀, 감자, 대두는 모든 FTA에서 관세보호지수가 높은 품목이고 밀은 모든 FTA에서 관세보호지수가 낮은 품목이다. 쌀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FTA에서 양허제의 품목이다. 보리와 옥수수는 인도, 칠레, ASEAN 순으로 관세보호수준이 높으며 미국과 EU는 관세보호지수가 5이다. 감자와 대두는 모든 FTA에서 관세보호지수가 8 이상으로 높은 품목이나, 고구마는 인도와 칠레와의 FTA에서는 관세보호지수가 9 이상으로 매우 높은 반면 ASEAN, EU, 미국과의 FTA에서는 관세보호지수가 5 이하인 품목이다. 녹두와 팥은 칠레, ASEAN, 인도와의 FTA에서 관세보호지수가 8 이상으로 높은 품목이나 미국과 EU에게는 관세보호지수가 6 이하의 수준으로 양허하였다.

그림 2. 식량작물류의 FTA별 관세보호지수 비교



축산물은 전반적으로 EU와 미국 FTA에서 다른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양허하였다. 특히 한·인도 FTA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꿀, 난류, 낙농품 등 대부분의 주요 축산물은 양허제외를 하였다. 쇠고기는 칠레, ASEAN, 인도와의 FTA에서는 관세보호지수가 9 이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양허를 하였으나 EU와 미국의 경우에는 관세보호지수가 6으로 다른 FT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양허하였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칠레, ASEAN, 인도 FTA에서 모두 관세보호지수가 8 이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양허하였으나, EU와 미국 FTA에서는 5 이하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양허하였다. 꿀은 모든 FTA에서 관세보호지수가 8 이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양허하였다.

그림 3. 축산물의 FTA별 관세보호지수 비교



낙농품의 경우도 한·인도 FTA에서는 모든 품목의 관세보호지수가 10으로 보호수준이 높고, 칠레, ASEAN과의 FTA보다는 EU, 미국과의 FTA에서 보호수준이 낮다. 버터와 치즈는 칠레, ASEAN, 인도와의 FTA에서는 관세보호지수가 7 이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양허하였으나 미국과 EU와의 FTA에서는 관세보호지수가 4 이하로 높은 수준으로 양허하였다.

그림 4. 낙농품의 FTA별 관세보호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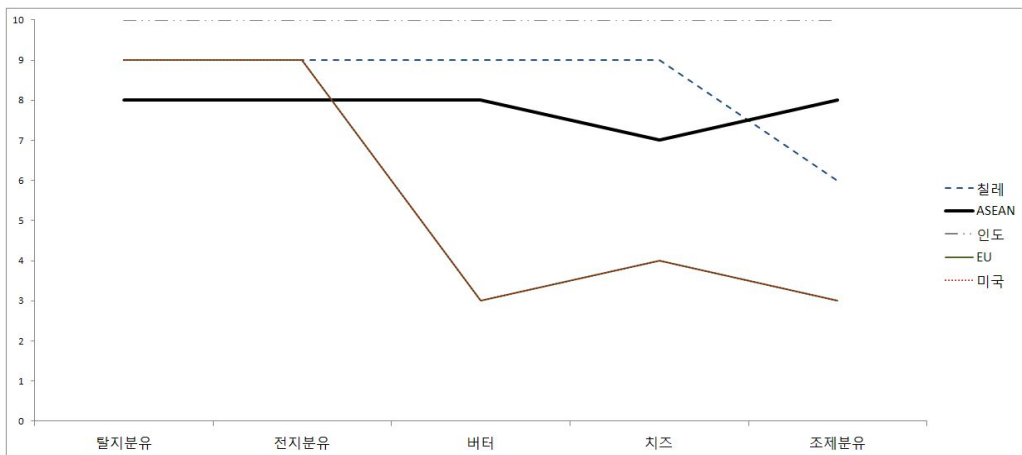


표 4. 주요 품목별·FTA별 관세보호지수 비교

품목류	품목명	대표세번	세번명	관세보호지수				
				칠레	ASEAN	인도	EU	미국
식량작물	쌀	1006201000	매현미	10	10	10	10	10
	보리	1107100000	맥아(볶지 않은것)	9	7	10	5	5
	밀	1001909030	밀(제분용)	2	2	3	2	2
	옥수수	1005909000	옥수수 기타	9	7	10	5	5
	감자	0701900000	감자(기타)	9	8	10	10	8
	고구마	0714204000	고구마(냉동)	9	5	10	5	4
	대두	1201909000	대두(기타/기타)	9	8	10	10	9
	녹두	0713319000	녹두(기타)	9	8	10	5	6
축산물	팥	0713329000	팥(기타)	9	8	10	5	6
	쇠고기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 없는 것)	9	10	10	6	6
	돼지고기	0203299000	돼지고기(냉동/기타)	4	10	10	3	3
	닭고기	1602329000	닭고기(기타조제저장)	9	10	10	5	4
	오리고기	0207330000	오리고기(미절단/냉동)	9	8	10	5	5
	꿀	0409000000	천연꿀	9	8	10	9	9
	난류	0408110000	난황(건조한 것)	9	3	10	5	5
낙농품	낙농품	0406101000	치즈(신선/모차렐라 치즈)	9	7	10	4	4
	탈지분유	0402101010	탈지분유(지방분이 전중량의 1.5% 이하)	9	8	10	9	9
	전지분유	0402211000	전지분유(지방분이 전중량의 1.5% 초과)	9	8	10	9	9
	버터	0405100000	버터	9	8	10	3	3
	치즈	0406101000	치즈(신선/모차렐라 치즈)	9	7	10	4	4
조제분유	조제분유	1901101010	조제분유(유아용)	6	8	10	3	3

4. 민감품목 선정방안

앞에서 분석한 식량작물, 축산물, 낙농품 20개 품목을 예시로 하여 RCEP 협상에서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1) 협상 대상국의 경쟁력(RCA, MCA)을 고려한 ‘수출 가능성’과 2) ‘기체결 FTA’의 관세보호지수와 FTA 대상국에 대한 수입의존도, 3) 국내 생산액 등 3가지 요인만을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정된 지표로 일부 품목만을 예시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협상에서의 민감품목 선정과는 동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4.1. 경쟁력(RCA지수, MCA지수) 반영방안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협상 상대국의 품목별 국제경쟁력과 국내경쟁력은 RCA지수와 MCA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국가의 해당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가별·품목별 생산비의 상대적 수준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위한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실제 시장에서의 수출액과 시장점유율 등과 같은 현재 시장의 정보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계측하여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다. RCA지수와 MCA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어떤 수출국의 i 품목에 대한 RCA 지수는 그 수출국의 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에 대한 i 품목의 수출시장 점유율의 비율이다.

$$RCA^i = \frac{X^i / TX^i}{X / TX}$$

X^i : 수출국의 i 상품 수출액

TX^i : 세계 전체의 i 상품 수출액

X : 수출국의 총 수출액

TX : 세계 전체의 총 수출액

어떤 수출국의 수입국 j 국가 시장에서의 i 품목에 대한 MCA 지수는 그 수출국의 j 국 수입시장 점유율에 대한 i 품목의 수입시장 점유율의 비율이다.

$$MCA_j^i = \frac{X_j^i / TX_j^i}{X_j / TX_j}$$

X_j^i : 어떤 수출국의 j 국에 대한 i 상품 수출액

TX_j^i : 전체 수출국의 j 국에 대한 i 상품 수출액

X_j : 어떤 수출국의 j 국에 대한 총수출액

TX_j : 전체 수출국의 j 국에 대한 총수출액

일반적으로 RCA지수와 MCA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 국가의 해당 품목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RCA지수가 1보다 큰 품목이고 국내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MCA지수가 1보다 큰 품목이다.⁹ 본 분석에서는 RCA지수와 MCA지수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면, 향후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우리나라로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간주하였다. 왜냐하면 RCEP 국가들의 수출 품목 중 국제경쟁력은 있으나($RCA > 1$)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품목($MCA < 1$)은 FTA 체결 이후 교역조건이 개선이 된다면 언제든지 국내 시장으로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RCEP 국가들의 수출 품목 중 국제경쟁력은 없으나($RCA < 1$)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MCA > 1$)의 경우에는 국제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을지라도 운송거리에 따른 신선도 및 비용, 수출 품종 등이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 적합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역조건이 개선이 되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아래 표의 1), 2), 3)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5. RCEP 국가의 품목별 경쟁력(RCA, MCA)에 따른 추가 수입 가능성

MCA \ RCA	RCA	경쟁력 있음(1이상)	경쟁력 없음(1이하)
경쟁력 있음(1이상)		1) 아주 높음	2) 높음
경쟁력 없음(1이하)		3) 높음	4) 낮음

식량작물과 축산물 그리고 낙농품의 품목별 수입 현황과 RCEP 역내 국가의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경쟁력은 RCEP 역내 국가들 중 수입 상위 1~2위 국가만을 살펴보았다. RCA지수는 FAO STAT의 국가별·품목별 수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하였으며 MCA지수는 Global Trade Atlas 자료 활용하였고, 국가별·품목별 우리나라 수입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각각의 자료의 최신 3개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단, 녹두와 팥 그리고 조제분유는 FAO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RCA를 계산하지 못하였다. HS 코드의 품목분류는 aT의 AG코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경쟁력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국제경쟁력이 높은 국가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옥수수, 감자, 대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은 RCEP 국가들의 국제경쟁력이 낮고 전체 수입 중 RCEP 역내 비중도 낮다. 특히 옥수수, 감자, 돼지고기 등의 품목은 국내시장에서도 RCEP 국가들

9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RCA지수와 MCA 지수를 단순히 1 이상과 1 이하로 구분하기보다는 지수의 절대 크기를 활용하여 경쟁력 수준을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지수가 1 이상인 품목과 아닌 품목으로 단순화하여 분석하였다.

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쌀, 보리, 고구마, 쇠고기, 꿀, 난류, 낙농품(세부품목 포함)은 국제/국내 경쟁력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품목별 수입현황 및 국가별 경쟁력

품목류	품목명	생산액 (10억 원)	수입액(백만 달러)			역내1위(백만 달러)				역내2위(백만 달러)			
			전체	RCEP	역내비중	국가	수입액	RCA	MCA	국가	수입액	RCA	MCA
식량작물	쌀	7,825	333	222	66.8%	중국	158.1	O	O	ASEAN	57.3	O	O
	보리	115	114	90	78.4%	호주	75.4	O	O	중국	13.2		
	밀	31	1,242	468	37.7%	호주	416.4	O		인도	53.1		
	옥수수	49	2,424	60	2.5%	호주	21.0			ASEAN	16.0	O	
	감자	209	141	13	9.4%	호주	8.2			중국	4.4	O	
	고구마	323	29	29	100.0%	중국	27.7	O	O	일본	1.3	O	O
	대두	520	1,288	161	12.5%	인도	69.0			중국	53.3		O
	녹두	13	6	6	100.0%	중국	4.1	-	O	ASEAN	1.8	-	O
축산물	팥	12	40	39	99.7%	중국	39.4	-	O	일본	0.0	-	O
	쇠고기	4,004	1,443	891	61.7%	호주	750.1	O	O	뉴질랜드	133.6		
	돼지고기	5,114	1,166	2	0.1%	호주	1.3			중국	0.2		
	닭고기	2,118	258	52	20.1%	ASEAN	40.7		O	중국	11.1		
	오리고기	1,312	1	0	4.7%	일본	0.1		O				
	꿀	333	7	4	55.8%	뉴질랜드	2.1	O	O	호주	1.2	O	
	난류	1,420	7	2	24.5%	중국	1.6	O	O	일본	0.2		O
	낙농품	1,695	694	240	34.6%	뉴질랜드	141.2	O	O	호주	89.0		O
낙농품	탈지분유	1,695	70	24	34.9%	호주	20.4	O	O	뉴질랜드	3.7	O	O
	전지분유	1,695	11	8	74.3%	호주	5.1	O	O	뉴질랜드	3.1	O	O
	버터	1,695	32	24	73.6%	뉴질랜드	16.1	O	O	호주	7.6	O	O
	치즈	1,695	325	126	38.8%	뉴질랜드	90.8	O	O	호주	33.8	O	
	조제분유	1,695	60	33	54.1%	뉴질랜드	14.4	-	O	호주	13.4	-	O

주 1) 생산액은 2009~11년 평균자료이며, 수입은 2010~12년 평균자료임.

주 2)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중국으로 가공품이 수입이 되고 있으며 감자, 고구마 등은 냉동이나 조제 저장처리 제품이 수입되고 있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 주요 통계(각 연도); FAO STAT; Global Trade Atlas 자료를 가공하였음.

경쟁력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RCEP 국가로부터 수입 가능성을 품목별로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상, 중, 하로 구분하기 위하여 <표 5>의 1)은 가중치를 1로 설정하였고, 2)와 3)은 가중치를 0.5로, 4)는 0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품목별로 RCEP 국가중 수입 1, 2위 국가의 역내 수입 비중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을 구하였다. 즉, 역내 1, 2위 국가로부터 수입이 100%되고 있고 이들 국가의 경쟁력이 높다면 이 품목은 1의 값을 가지게 된다. 본 분석에서는 상은 0.65~1.00, 중은 0.35~0.65, 하는 0.00~0.35로 설정하였다.¹⁰

아래 <표 7>은 <표 5>와 <표 6>을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경쟁력을 고려한 분석결과 식량작물에서는 쌀과 보리, 고구마가 가장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옥수수, 감자, 대두는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축산물은 쇠고기, 꿀, 난류, 낙농품의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돼지고기는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대두와 같이 사료용 수입이 있는 품목의 경우 대두 세번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국내생산액만을 고려한다면 보리, 고구마, 녹두, 팥, 꿀 등은 생산액이 높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보다 민감도가 낮아 후순위로 고려되겠지만, 협상 대상국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관세하락에 따른 수출증대 가능성 측면을 반영한다면 RCEP 협상에서는 이들 품목이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보다 우선 고려될 수 있다.

¹⁰ RCEP은 다자간 협상이기 때문에 역내 수입 비중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고려할 역내 국가의 범위는 연구자가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가중치 설정과 상·중·하 구분을 위한 범위는 특정한 값이 가장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가중치의 경우 가령 예를 들어 MCA가 RCA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표 5>의 1)은 가중치 1.0, 2)는 0.7, 3)은 0.3, 4)는 0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이는 각 연구자가 연구의 성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해서 설정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설정한 값의 합리성보다는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 7. 경쟁력을 고려한 품목별 우선순위

품목류	품목명	1위 국가			2위 국가			합계	평가
		국가명	역내비중	가중치	국가명	역내비중	가중치		
식량작물	쌀	중국	71.2%	1	ASEAN	25.8%	1	0.97	상
	보리	호주	83.8%	1	중국	14.7%	0	0.84	상
	밀	호주	89.0%	0.5	인도	11.3%	0	0.44	중
	옥수수	호주	35.0%	0	ASEAN	26.7%	0.5	0.13	하
	감자	호주	63.1%	0	중국	33.8%	0.5	0.17	하
	고구마	중국	95.5%	1	일본	4.5%	1	1.00	상
	대두	인도	42.9%	0	중국	33.1%	0.5	0.17	하
	녹두	중국	68.3%	0.5	ASEAN	30.0%	0.5	0.49	중
축산물	팥	중국	100.0%	0.5	일본	0.0%	0.5	0.50	중
	쇠고기	호주	84.2%	1	뉴질랜드	15.0%	0	0.84	상
	돼지고기	호주	65.0%	0	중국	10.0%	0	-	하
	닭고기	ASEAN	78.3%	0.5	중국	21.3%	0	0.39	중
	오리고기	일본	100.0%	0.5	-	0.0%	0	0.50	중
	꿀	뉴질랜드	52.5%	1	호주	30.0%	0.5	0.68	상
	난류	중국	80.0%	1	일본	10.0%	0.5	0.85	상
	낙농품	뉴질랜드	58.8%	1	호주	37.1%	0.5	0.77	상
낙농품	탈지분유	호주	85.0%	1	뉴질랜드	15.4%	1	1.00	상
	전지분유	호주	62.2%	1	뉴질랜드	37.8%	1	1.00	상
	버터	뉴질랜드	67.1%	1	호주	31.7%	1	0.99	상
	치즈	뉴질랜드	72.1%	1	호주	26.8%	0.5	0.85	상
	조제분유	뉴질랜드	43.6%	0.5	호주	40.6%	0.5	0.42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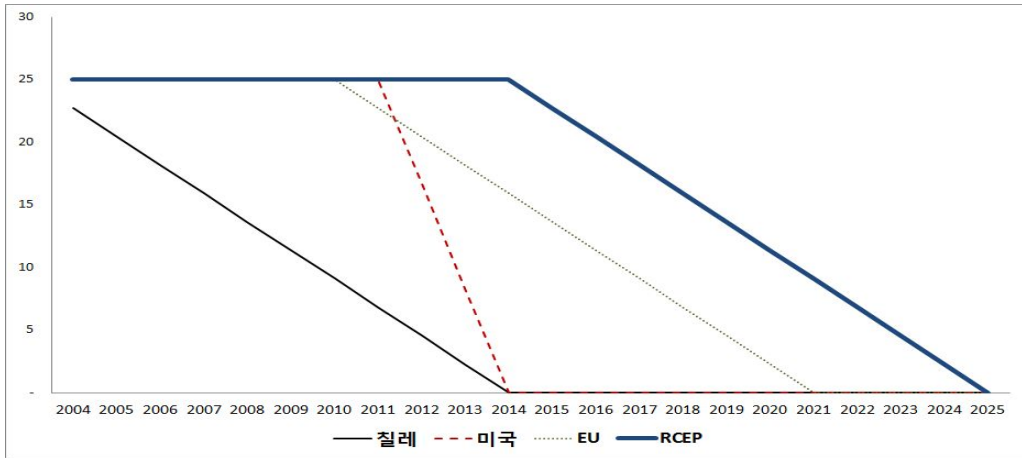
주: 생산액은 2009~11년 평균자료이며, 수입은 2010~12년 평균자료임.

자료: 농림수산물품 주요 통계(각 연도); FAO STAT; Global Trade Atlas 자료를 가공하였음.

4.2. 보호지수와 FTA 수입의존도 반영 방안

우리나라가 이미 협상을 완료한 FTA들의 양허안과 해당 FTA에서의 수입 의존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가령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국가들 중 RCEP에 포함되지 않는 미국과 EU와의 양허협상 결과, 어느 특정 품목의 관세보호지수가 낮은 동시에 미국과 EU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면, 이 품목은 RCEP 협상에서는 덜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FTA별·연차별로 관세 변화를 돼지고기(냉동/삼겹살)의 예를 들어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돼지고기는 칠레, 미국과 EU FTA에서 보호지수가 4와 3으로 낮고, 이들 국가로의 수입 의존도가 84.1%인 품목이다. 즉, 칠레와 미국 그리고 EU산 돼지고기의 경우 이미 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관세감축으로 인해 RCEP 국가들에 비하여 보다 빠른 시점에서 가격경쟁력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며, 또한 현재 한국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높다. 그러므로 큰 변화가 없는 이상 현재의 시장구도를 바꾸기가 쉽지 않으므로 RCEP 국가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대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FTA별·연차별 관세 감축 변화(돼지고기 냉동/냉겍살)



주 1) 가로축은 연도이며, 세로축은 관세율임.

주 2) RCEP은 2015년도에 발효하여 한·칠레, 한·EU FTA에서처럼 10년 철폐로 양허한다고 가정하였음.

아래 <표 8>은 기체결 FTA에서의 보호지수와 RCEP 역내 국가를 제외한 기체결 FTA(칠레, 미국, EU)로부터의 수입의존도를 나타낸 표이다. 칠레의 경우 관세보호지수가 높은 편이지만, 돼지고기를 제외하면 수입이 미미한 수준이거나 없기 때문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옥수수, 돼지고기, 오리고기는 ASEAN에서의 관세보호지수는 높고 RCEP 역내 의존도가 낮은 품목이다. 특히 이들 품목은 미국과 EU와의 FTA 협상에서 관세보호지수가 낮고 이들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다. 따라서 옥수수, 돼지고기, 오리고기의 경우에는 RCEP산 농산물이 가격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미국과 EU산 농산물에 비해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RCEP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닭고기, 난류, 낙농품 등의 품목은 RCEP 의존도가 아주 낮지는 않지만, 기체결 FTA 수입 비중이 높고 관세보호지수는 낮은 품목이다. 수입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들 품목도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감자의 경우 감자(기타) 세번을 대표세번으로 고려하여 미국과 EU의 민감도가 높게 나왔으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세번은 감자(조제저장처리/냉동, 2004.10.0000)와 전분(감자의것, 1108.13.0000)이다. 이들 품목은 관세보호지수가 각각 2와 6에 해당된다. 세번을 고려하여 분석을 하면 감자의 경우도 RCEP 협상에서 민감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협상을 위한 분석을 할 때에는 정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번별 분석을 고려해야 한다.

표 8. FTA별 관세보호지수와 수입 의존도

품목류	품목명	수입액(백만 달러)					관세보호지수				
		전체 (A)	RCEP (B)	역내 의존도 (B/A)	기체결 FTA (C)	비중 (C/A)	ASEAN	인도	칠레	EU	미국
식량 작물	쌀	332.7	222.2	66.8%	103.9	31.2%	10	10	10	10	10
	보리	114.2	89.6	78.4%	6.9	6.0%	7	10	9	5	5
	밀	1,241.9	467.6	37.7%	261.5	21.1%	2	3	2	2	2
	옥수수	2,423.9	59.5	2.5%	1,644.2	67.8%	7	10	9	5	5
	감자	141.1	13.2	9.4%	123.3	87.3%	8	10	9	10	8
	고구마	29.3	29.3	100.0%	0.0	0.0%	5	10	9	5	4
	대두	1,287.7	161.4	12.5%	217.8	16.9%	8	10	9	10	9
	녹두	6.0	6.0	100.0%	0.0	0.0%	8	10	9	5	6
축 산 물	팔	39.6	39.5	99.7%	0.0	0.0%	8	10	9	5	6
	쇠고기	1,443.5	890.6	61.7%	536.1	37.1%	10	10	9	6	6
	돼지고기	1,165.8	1.6	0.1%	980.3	84.1%	10	10	4	3	3
	닭고기	258.4	52.0	20.1%	104.8	40.6%	10	10	9	5	4
	오리고기	1.5	0.1	4.7%	1.4	96.8%	8	10	9	5	5
	꿀	7.1	3.9	55.8%	2.9	41.5%	8	10	9	9	9
	난류	7.3	1.8	24.5%	4.4	59.7%	3	10	9	5	5
	낙농품1)	694.2	240.2	34.6%	400.9	57.8%	7	10	9	4	4
낙 농 품2)	탈지분유	69.9	24.4	34.9%	43.5	62.3%	8	10	9	9	9
	전지분유	11.2	8.3	74.3%	2.9	25.6%	8	10	9	9	9
	버터	32.3	23.8	73.6%	8.4	26.1%	8	10	9	3	3
	치즈	325.5	126.2	38.8%	177.5	54.5%	7	10	9	4	4
	조제분유	60.4	32.7	54.1%	27.7	45.9%	8	10	6	3	3

주 1) 품목별 보호 지수는 품목의 세번 중 RCEP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이 되는 세번을 대표 세번으로 보고 해당 세번의 양허안을 지수화한 것임.

2) 축산물류의 낙농품1)은 낙농품으로 분류된 모든 품목의 합을 의미함. 낙농품에는 2)에서 분류한 탈지분유, 전지분유, 버터, 치즈, 조제분유 등의 세부품목 이외에도 요구르트, 유장 등의 품목이 있음.

자료: Global Trade Atlas(2010~12년 평균), 각 FTA 협정문 상품양허표.

<표 8>을 활용하여 기체결 FTA 대상국 및 RCEP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과 관세보호지수를 동시에 고려한 품목별 우선순위를 분석해보았다. 우선, 각 품목별로 RCEP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기체결 FTA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으로 나누고, 여기에 기체결 FTA의 평균관세보호지수(기체결 FTA별 관세보호지수를 수입액 비중으로 가중평균)를 곱하였다. 각 품목별로 산출되는 이 지수를 ‘RCEP의 수입시장 영향력 지수’라고 하면 이 지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수입시장 영향력 지수} &= \frac{\frac{RCEP \text{수입}}{\text{전체수입}}}{\frac{\text{기체결 FTA 수입}}{\text{전체수입}}} \times \text{평균관세보호지수} \\
 &= \frac{RCEP \text{수입}}{\text{기체결 FTA 수입}} \times \text{평균관세보호지수}
 \end{aligned}$$

특정상품의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 있어서 RCEP으로부터의 수입이 기체결 FTA로의 수입보다 많다면 이 지수의 숫자는 커지게 되며, 역시 관세보호지수가 높아질수록 이 지수의 숫자가 커지게 된다. $\frac{RCEP \text{수입}}{\text{기체결 FTA 수입}}$ 이 클수록 현재 수입시장에서 기체결 FTA 국가들보다 RCEP의 시장지배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평균관세보호지수가 클수록 향후 FTA 체결 이후 RCEP이 기체결 FTA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 관세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RCEP의 수입시장 영향력 지수가 커질수록 향후 FTA 체결 이후 이 상품의 수입시장에서 RCEP의 영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RCEP 협상에서 민감하게 다루어야 할 품목이 된다. 한편, 관세보호지수가 9 이상부터는 기체결 FTA에서 실질적으로 현행관세가 유지되므로 이들 품목은 향후 RCEP과의 협상에서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품목들이다.

분석 결과 식량작물의 경우 쌀, 보리, 고구마, 녹두, 팥이 RCEP과의 협상에서 민감한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축산물에서는 쇠고기, 꿀이 민감한 품목으로 나타났다. 낙농품 중에서는 전지분유가 민감한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생산액이나 수입액이 큰 옥수수, 감자, 돼지고기, 오리고기는 RCEP과의 협상에서는 민감도가 낮은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표 9. 수입시장 영향력 지수

품목류	품목명	수입액(백만 달러)				보호지수			영향력 지수	평가
		전체 (A)	RCEP (B)	기체결 FTA (C)	비중 (B/C)	EU	미국	가중평균		
식량작물	쌀	332.7	222.2	103.9	2.14	10	10	10	21.39	상
	보리	114.2	89.6	6.9	12.99	5	5	5	64.93	상
	밀	1,241.9	467.6	261.5	1.79	2	2	2	3.58	중
	옥수수	2,423.9	59.5	1,644.2	0.04	5	5	5	0.18	하
	감자	141.1	13.2	123.3	0.11	2	6	5	0.50	하
	고구마	29.3	29.3	0.0	∞	5	4	4	∞	상
	대두	1,287.7	161.4	217.8	0.74	10	9	9	6.67	중
	녹두	6.0	6.0	0.0	∞	5	6	6	∞	상
축산물	팥	39.6	39.5	0.0	∞	5	6	5	∞	상
	쇠고기	1,443.5	890.6	536.1	1.66	6	6	6	9.97	상
	돼지고기	1,165.8	1.6	980.3	0.00	3	3	3	0.00	하
	닭고기	258.4	52.0	104.8	0.50	5	4	4	2.02	중
	오리고기	1.5	0.1	1.4	0.07	5	5	5	0.36	하
	꿀	7.1	3.9	2.9	1.34	9	9	9	12.10	상
	난류	7.3	1.8	4.4	0.41	5	5	5	2.05	중
	낙농품	694.2	240.2	400.9	0.60	4	4	4	2.40	중
낙농품	탈지분유	69.9	24.4	43.5	0.56	9	9	9	5.05	중
	전지분유	11.2	8.3	2.9	2.86	9	9	9	25.76	상
	버터	32.3	23.8	8.4	2.83	3	3	3	8.50	중
	치즈	325.5	126.2	177.5	0.71	4	4	4	2.84	중
	조제분유	60.4	32.7	27.7	1.18	3	3	3	3.54	중

주 1) 관세보호지수의 가중평균은 EU와 미국의 수입 비중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임.

주 2) 고구마, 녹두, 팥의 경우 기체결 FTA의 수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수입이 아주 미미하여 수입이 없는 것으로 고려하였음. 따라서 비중(B/C)의 값이 무한대로 측정되었음.

4.3. 민감품목 선정 방안

앞에서 살펴본 기준에 품목별 생산액을 추가하여 RCEP에서의 민감품목을 선정해 보았다.¹¹ 생산액은 1조 원 이상인 품목은 상, 1천억 원 이상은 중 그리고 그 이하는 하로 설정하였다. 낙농품 세부품목은 생산액이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낙농품 생산액이 ‘상’임을 고려하여 개별 품목은 ‘중’으로 고려하였다.

생산액과 경쟁력 그리고 수입시장 영향력 지수를 동일한 가중치를 주고 최종 민감품목을 선정하였다. 각 항목에서 상은 3점, 중은 2점 그리고 하는 1점을 부여하였으며,

¹¹ 이 밖에도 TRQ 설정품목과 검역요인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나 이 연구의 목적은 기체결된 FTA에서의 양허내역을 반영한 신규 FTA에서의 민감품목 선정방법 분석이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들 세항목의 합이 7~9이면 상, 4~6이면 중 그리고 1~3이면 하로 반영하여 최종 민감도를 구하였다.

최종분석 결과 쌀, 보리, 고구마, 쇠고기, 닭고기, 꿀, 난류, 낙농품이 RCEP 협상에서 가장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 감자, 대두, 녹두, 팥, 돼지고기, 오리고기는 민감도가 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옥수수는 민감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구마와 꿀은 우리나라 생산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아주 높은 품목은 아니지만 RCEP의 경쟁력과 우리나라 수입시장에서 RCEP이 미치는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녹두와 팥은 우리나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 RCEP의 경쟁력이 높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RCEP의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민감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감자와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생산에서 중요한 품목들이지만 RCEP 국가들의 경쟁력이 낮고 우리나라 수입시장에서 RCEP의 영향력이 낮은 품목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민감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RCEP에서의 민감품목 선정

품목류	품목명	생산액지수	경쟁력지수	영향력지수	종합점수	평가
식량 작물	쌀	상	상	상	9	상
	보리	중	상	상	8	상
	밀	하	중	중	5	중
	옥수수	하	하	하	3	하
	감자	중	하	하	4	중
	고구마	중	상	상	8	상
	대두	중	하	중	5	중
	녹두	하	중	상	6	중
축산물	팥	하	중	상	6	중
	쇠고기	상	상	상	9	상
	돼지고기	상	하	하	5	중
	닭고기	상	중	중	7	상
	오리고기	상	중	하	6	중
	꿀	중	상	상	8	상
	난류	상	상	중	8	상
낙농품	낙농품	상	상	중	8	상
	탈지분유	중	상	중	7	상
	전지분유	중	상	상	8	상
	버터	중	상	중	7	상
	치즈	중	상	중	7	상
	조제분유	중	중	중	6	중

5. 요약 및 결론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협상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각각의 연구자들의 주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즉, 민감품목 선정에는 일관된 어떤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에서 협정 대상국에 보다 특화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체결된 협상의 영향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CEP 협상을 예를 들어, 교역조건 개선 시 협상 상대국의 수출 증가 가능성(경쟁력)과 기체결 FTA의 관세보호지수와 수입의존도, 그리고 국내생산액 순위를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경쟁력 요인과 기체결 FTA에서의 관세보호지수, RCEP으로 부터의 수입 비중, 그리고 국내 생산액순위는 RCEP에서의 품목별 민감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기체결 FTA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민감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식량작물, 축산물 그리고 낙농품을 분석한 결과 RCEP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쌀, 보리, 고구마, 쇠고기, 꿀, 난류, 낙농품과 같은 품목이고, 기체결 FTA에서의 보호지수와 수입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수입시장에서 RCEP의 영향력이 높은 품목은 쌀, 보리, 고구마, 녹두, 팥, 쇠고기, 꿀과 같은 품목들이다. 반면, RCEP의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옥수수, 감자, 대두, 돼지고기와 같은 품목이고, 기체결 FTA에서 보호지수가 낮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즉, 우리나라 수입시장에서 RCEP의 영향력이 낮은 품목은 옥수수, 감자, 돼지고기, 오리고기와 같은 품목이다. 이들을 반영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 RCEP 협상에서 분석 품목들 중 쌀, 보리, 고구마, 녹두, 팥, 쇠고기, 꿀과 같은 품목은 주요 민감품목으로 예상되지만, 감자, 옥수수,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민감도가 떨어지는 품목들 될 것이다. 국내생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보리, 고구마, 녹두, 팥, 꿀 등은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떨어져야 하지만, 협상 상대국의 경쟁력과 기체결 FTA를 고려하면 국내 생산액이 높은 품목들보다 이들 품목이 RCEP 협상에서는 더 민감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예를 들어 난류의 경우 RCEP 국가 중에서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중국산 난류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인 동시에 우리나라 수입 비중이 25% 이상으로 높은 품목으로 RCEP의 관심도가 높은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품목이다. 그러나 난류는 이미 한·미 FTA와 한·EU FTA 등의 기체결 FTA에서 높은 수준으로 양허하였고 기체결 FTA 국가들로의 수입 비중도 50% 이상인 품목이다. 따라서 난류와 같은 품목은 이미 개방폭이 큰 품목이기 때문에 다른 민감품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RCEP 협상에

서 높은 수준으로 방어할 필요성이 낮은 품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협상의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여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의 결과를 이끌어야 한다. 현재 관세보호지수가 높은 한·ASEAN과 인도 FTA의 양허안은 RCEP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 민감품목 선정에서 기체결 FTA를 반영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기 때문에 분석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경쟁력분석(RCA, MAC 지수)이나 민감품목 선정 등에 있어서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는 검역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과 TRQ, 현행관세 수준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였다. 실제 협상에서는 정량적 분석을 1단계로 시행하고 2 단계에서는 비관세장벽 등과 같이 정량적으로 고려하기 힘든 요소는 정성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민감품목 우선 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에서 한·ASEAN FTA와 한·인도 FTA의 관세보호수준이 높고 이들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RCEP 역내의 기체결된 FTA는 민감품목 선정 시 고려되지 않았지만, RCEP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호주 FTA가 발효되고, 한·중 FTA 협상과 한·뉴질랜드 FTA도 타결이 되었으므로 이들 기체결 FTA의 양허 내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민감품목 선정 등 협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중국 등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RCEP 협상에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중국과의 FTA 양허내역을 기체결 FTA로 분류하되, 이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문. 2002. 한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민감분야 선정 및 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 김박수, 이창재, 박복영, 이홍배, 이홍식, 임혜준, 이형근, 김혁황. 2005. 「한중일 FTA: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문한필, 최세균, 정대희, 홍현표, 장홍석, 김봉태, 김진경. 2011. 「한·인도네시아 FTA 농수산물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윤환, 최창환. 2012. “한중 FTA 협상에 따른 공산품의 민감품목과 관심품목 추정에 관한 연구”. 「국제통상연구」 제17권 제4호(2012.12). PP. 35-59
- 서진교, 임소영. 2005. 「DDA 농업협상 대응전략」. R4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주호, 전상곤, 조영수, 이대섭, 김태훈, 김배성, 신용광, 허덕, 이상민, 신유선, 정대희. 2009. 「DDA 농업협상 시나리오별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 방향 연구」. C2009-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주호, 문한필, 정대희, 박한울. 2013. 「RCEP(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재욱, 서진교, 조규대, 김상현, 임소영. 2005. 「개도국 특별품목(SP) 및 특별수입규제조치(SSM) 관련 협상 대책」. C2005-5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이재욱, 서진교, 김상현. 2003.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C2003-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혜련, 임정빈. 2010. 「한국 및 주요국 FTA 농업분야 원산지 규정 연구」. 2010년도 한국농업정책 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206-253
- 정혜련, 임정빈. 2014. “한국과 주요국 FTA 협정의 농업분야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연구”, 「농촌경제」 제37권 제1호. PP. 33-67
- 최세균, 권오복, 어명근, 강혜정, 황의식, 허주녕. 2006. 「농업부문 FTA 추진전략 연구 및 DB구축」. C2006-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어명근, 정대희. 2009. 「주요국과의 농업부문 FTA 추진 현황과 전망」. P1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문한필, 정대희. 2010. 「한-베트남 FTA 농수산물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Estevadeordal, Antoni. 2000.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vol. 34.
- ICTSD. 2007. Indicators for the Selection of Agricultural Specail Products: Some Empirical Evidence Information Note: Number 1.
- Jean, S., D. Laborde and W.Martin. 2005. “Sensitive Products : Selection and Implications for Agricultural Trade Negotiations”. Working Paper 05-02. TradeAG.
- Martin. W., Wang. Z. 2004. Improving Market Access in Agriculture, mimeo. World Bank, Washington DC.
- Sharma, R. 2006. Assessment of the Doha Round agricultural tariff cutting formulae, paper pre-

sented for the FAO workshop on WTO rules for Agriculture Compatible with Development,
2-3 February 2006.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연도.

Global Trade Atlas.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FTA 포탈. <<http://www.fta.go.kr>>.

FAO. <<http://www.fao.org>>.

WTO. <<http://www.wto.org>>.

원고 접수일: 2014년 09월 17일
원고 심사일: 2014년 09월 18일
심사 완료일: 2014년 12월 18일